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자동차 제작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다소 과도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일부 차종과 동일한 차종이면서 검사주기가 상이한 대형 승합차에 대한 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형 및 소형 승합차와 비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각각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최초검사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안 제74조 별표 15의2)

나. 승차 정원 등이 승용자동차와 비슷한 형태의 중형 승합차 중에서 일부 차종에 대해 최초검사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안 제74조 별표 15의2)

다. 사업용 대형 승합차 대비 강화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에 대해 당초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주기를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 것으로 완화(안 제74조 별표 15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관련)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비사업용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된 경우	1년
사업용 경형·소형의 승합자동차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된 경우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중형·대형의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비사업용 중형 승합자동차 경우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3858